

(별첨#5) 업종특례지구 내 입주제한업종표

입주제한업종(제7조의2제1항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제한 예외업종(세세분류)
농업·임업·어업 (01 ~ 03)	-
광업 (05 ~ 08)	-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35)	-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36 ~ 38)	-
건설업 (41 ~ 42)	-
도소매업 (45 ~ 47)	* 전자상거래업 (47911, 47912)
운수·창고업 (49 ~ 52)	-
숙박·음식점업 (55 ~ 56)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	* 영상·오디오물 제작업 및 관련 서비스업 (59111, 59112, 59113, 59114, 59120, 59130, 59201, 59202)
금융·보험업 (64 ~ 66)	-
부동산업 (68)	-
기타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73)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4 ~ 76)	-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4 ~ 87)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 91)	-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94 ~ 98)	* 제조업과 연계된 자동차, 컴퓨터, 통신장비 수리업 (95110, 95120, 95211, 95212, 95220)
국제 및 외국기관 (99)	-

※ 공통사항

1.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부터 제5항에 해당되는 업종의 특례지구 입주는 제한하지 아니함
2. 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산업단지계획을 포함한다)에 용도가 특정된 폐기물처리시설용지, 전력시설용지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의 특례지구 입주를 제한함
3. 산업단지의 안전, 환경, 기반시설의 여건상 입주를 추가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에서 제한업종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음

○ 광양국가산단 업종특례지구 내 추가제한 업종

- 염색, 주물, 도금, 염·안료, 피혁 관련업종과 용수 다소비 업종 (레미콘, 아스콘업종)에 대하여 입주를 제한함
- 위 표 공통사항 2.에 따라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E.38)은 업종특례지구 내 입주를 제한함
- 명당3지구 내 유해물질 배출량이 높은 업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지를 제한함

구 분	분류코드	배치도
① 제조업 (업종분류코드 내 제조업 가능)	제한업종 C17, C19, C20, C28	
② 복합업종	C23, C24, C25, C29	
③ 제조업 (업종분류코드 내 제조업 가능)	제한업종 C17, C19, C20, C23, C28	
④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D35	
⑤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제조업 (업종분류코드 내 제조업 가능)	제한업종 C17, C19, C20, C23, C28	
⑥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업종분류코드 내 제조업 가능)	H52 제한업종 C17, C19, C20, C23, C28	